

알림장

수신: 군산시 나운동 *****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발신(알림자): 군산시 *****

대상:

- (1) 군나현2016-66호 공고 제5 수목 전지, 벌목 작업 결의
- (2) 2016.12.06. ~ 2016.12.07. 위 대상(1)의 시행 행위
-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② 15.]

1. 위 대상(1)은 귀 회의에서 4월 설문조사를 할 정도로 주민의견이 극심하게 상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의라 하겠습니다.

2. 위 대상(3) 시행령에서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이란

상반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의결(결정)하라는 게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충분한 토의 장소를 마련하거나 등의 절차를 의결하여 조정에 이르도록 하는 뜻이라 하겠습니다.

3. 500여 세대의 아파트 주 출입구가 경사지면 많은 미세먼지와 매연, 소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사 진 정문을 가진 우리 아파트 출입로는 우거진 수목으로 조경하게 설계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대대적인 전지를 한 상태입니다.

금년4월 귀 회의가 설문한 사항은 “강풍이나 폭설에 부러지거나 넘어져 막대한 피해를 줄 수목”이나, 그런 나무는 이 시각 단 한그루도 없어 보입니다.(첨부) 따라서 넘어질 나무라고 응한 설문을 근거로 그렇지 않는 나무에 손대는 행위는, 사업비 지출만을 목적인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상(2) 행위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재차 당부 드립니다.

매일 방청제 물을 마시고 세안해야 하는 시설개선 예산이 훨씬 더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새 몇 마리 잡아내면 해결될 새똥 피해(새 사는 숲속 APT가치가 훨씬 높기에 해서도 안 될 행위)등도 이유 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위 대상(2)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주시시오.

그리고 전지간벌을 원하시는 분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토론회 개최를 주선해 주시기를 또 다시 부탁드립니다.

4. 수송동 신시가지 아파트에 비해 월등하게 뛰어난 출입구 조경이 훼손되기 이전인 2016.12.03. 촬영한 상태의 수목 영상을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1. 군산현대1차아파트 1동. 2동 사이 조경 (2016.12.03. 상태)

1. 참조 URL: <http://cafe.daum.net/i-apt>

(daum 053) 벌목, 전지작업 직전-수목상태

(daum 052) 공동주택관리 법 상으로도 위법

(daum 051) 주민대표회의의 심각한 범죄행위





